“5월 광주정신이 아시아 민주화 이끌었다”

‘아시아지역 광주 유학생들의 5·18생각들’ 집담회

도둑·약탈없는 10일간의 직접민주주의 ‘5·18=민주화’ 인식
전두환 정권 억압에 ‘NO’ 공감…필리핀·인니 등 큰 영향 끼쳐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반면 5·18을 알지 못했던 방글라데시, 부탄, 파키스탄 등은 제대로 된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화를 염원하고 있는 국가라면 광주정신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는 ‘아시아 지역 광주 유학생들의 5·18생각들’을 주제로 한 집담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역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학생들이 5·18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로, 외국 학생들의 5·18집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글라데시 샤헤드 카예스(Shahed Kayes, 전남대 석사과정)씨는 이날 집담회에서 ‘1980년 한국의 광주항쟁과 1990년 방글라데시의 고노-안돌론(시민-운동):비교 논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5·18 당시 10일 동안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광주에서는 도둑·강도·약탈 등이 없었다는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카예스씨는 “방글라데시는 1990년 대규모 민주항쟁인 ‘고노 안돌론’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독재 권력이 살아있다”며 “광주와 달리 항쟁 희생자를 기억하고 정치시스템을 바꾸려는 개념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네팔에서 온 자넘 마하라전(Janam Maharjan, 조선대 석사과정)씨는 “네팔도 매년 5월18일이 민주주의의 날”이라면서 “네팔에서도 광주처럼 부당한 통치에 대한 저항한 대규모 민주주의 운동이 두차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5·18:외부인의 시각’이란 주제발표에서 “1980년 5월 전세계 언론은 광주에서 깡패나 급진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수십명이 죽었다고 보도했고 네팔 국민 또한 그렇게 알았다”며 “하지만, 진실은 곧 드러났고 오늘날 한국이 대표적인 민주국가가 되는데 광주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하라전씨에 따르면 네팔은 1846년부터 라나 가문의 왕위세습이 이어지며 국민들은 자유가 제한되고 교육도 받지 못했다. 1940년대 라나 독재에 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 1951년 민주국가가 수립된 이후 2000년대 들어 기아넨드라 왕이 다시 독재권력을 휘둘렀다. 국민들은 다시 봉기했고 2006년 5월18일 군주제가 폐지되며 이날을 매년 기념하고 있다.

인도 출신 비자이 바틸(Vijay B. Patil, 전남대 박사과정)씨는 ‘우리 세계의 노예제도’ 발표에서 5·18 정신에 대해 ‘인간의 원대한 꿈, 자유·자율에 관한 인간의 이야기’로 정의했다.

바틸씨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No’(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며 “1980년 5월 광주는 전두환 정권의 억압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No’라고 했고, 7년 후 1987년 6월 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불러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TV 등 가전제품의 주요 원료인 코발트는 콩고 등 3세계에서 무장단체들이 어린이를 노예처럼 착취해 채굴하고 있다”며 “주요 스마트폰 생산업체인 삼성과 LG가 있는 한국에서 광주시민들이 불법 광물채취에 대해 ‘No’라고 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28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광주 유학생들의 5·18생각들’ 시민집담회에서 인도출신 비자이 바틸씨가 ‘우리 세계의 노예제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중형 왜?

“교단·사회에 준 충격과 불신 너무 컸다”

광주지법, 징역 2년씩 선고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3학년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수를 했고, 금품 등 대가를 주고 받은 증거 등도 없었지만, 교단과 사회에 준 충격과 분노·불신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류종명 판사)은 지난 26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여·52)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은 학생·학부모·교직원·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불신을 초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자수를 한 점과 의심은 들지만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은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선처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특히 “피고들의 행동은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온 학부모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행정실장 A씨에 대해선 시험지 관리책임을 맡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학부모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이들은 지난 4월 20일과 7월 2일 광주 모 고교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년을 2년여 앞둔 A씨는 올해 4월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식자리 등에서 B씨에게 부탁을 받고 학교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빼냈다. B씨는 빼돌린 시험문제를 재정리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아들이 미리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0일 근무한 원장 조카 1년 근무로 속여

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대표 징역형·원장 벌금형

광주의 한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이 친척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1700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A(55)씨와 원장 B(여·47)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 부정수급 액수가 많은데도 피고인들이 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한 명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1675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B씨의 조카 C(여)씨는 2016년 8월 어린이집에서 10여일만 근무한 뒤 그만뒀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C씨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반편성을 하고 서류를 꾸몄으며 C씨도 이를 알고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줬다.

광산구는 C씨와 관련해 1년동안 해당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 872만원과 연장근로 수당, 매월 20만원 안팎의 근무환경 개선비 등 명목으로 1675만원을 지원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비위가 적발되자 광산구에 부정수급금 872만원을 공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 참여 시민 재심서 무죄 선고 잇따라

광주지법 “헌정 수호 정당행위”
검찰, 억울한 유죄 45명 찾아내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에 대한 재심에서 또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5·18 관련자 중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던 45명을 찾아내 올해 5월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이뤄진 두 번째 판결이다.

지난 13일 첫 번째 판결에서도 법원은 시민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8일 “소요 등 혐의로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은 정모(5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18과 관련해 전두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며, 따라서 범죄행위도 아니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고, 1981년 1월 계엄 해제시까지 행한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로 확인된 만큼 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봉사였던 정씨는 1980년 5월 21일 목포에서 시민 10여명과 함께 버스에 나눠타고 “광주시민이 다 죽어가는데 목포시민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가두시위를 하고, 다음날 광주로 이동해 시민군으로 활동했다.

정씨는 당시 5월 26일 오후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대비해 경계근무를 하다가 27일 새벽 계엄군에 체포됐다. 정씨는 소요·계엄법 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죄로 기소돼 전교사 군법회의에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생아 두번이나 병원에 버려

20대 산모 징역형 선고

출산한 아기를 두 번이나 병원에 버리고 달아난 20대 산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남준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데다, 아기 아버지가 임신 사실을 몰라 현실적으로 자신 외에는 아기를 보호할 사람이 없는데도 유기를 했다”면서 “A씨가 자수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원생 학대 의혹’ 보육시설 원장 겨우 한달간 직무정지?

인권위 해임 권고 무시 복지법인 이사회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속 원생들 “원장 다시 복귀할까 두려워”

‘고아 소녀들’을 학대한 의혹을 받고있는 광주 YWCA 산하 보육시설장<광주일보 2018년 9월 27일자 6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임 권고를 무시하고 한달간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다.

28일 광주시와 동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서 광주 YWCA 산하 보육시설 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안건을 심의해 한 달간 직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광주YWCA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여자보육원생들을 학대한 시설장 해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고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뒤늦게 이사회를 열어 직무정지 조치만을 내린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YWCA 안팎에서는 원장급 이상 징계는 광주 YWCA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통해 겨우 한달 간의 직무정지를 내린 점을 들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YWCA측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보육원생 사이에선 원장이 다시 시설로 복귀할까 두려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보육시설의 한 원생은 “보육생은 물론 시설내 일부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도 원장에 대한 징계가 겨우 직무정지 한달이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인권위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직무 정지 한달을 내린 것을 볼때 이제는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22일 아동학대협의로 경찰에 고발된 직원에 대한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다음주 중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특별 감사 결과 해당 보육시설이 보조금 1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반환(여입)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법무사무소 직원이 주민센터 여성 공무원 치마 속 ‘몰카’

쌍나팔

○…휴대전화로 주민센터에서 20대 여성 공무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 법무사무소 직원이 경찰서행.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서구 한 주민센터에서 20대 여성 공무원 B씨가 민원창구 앞에서 잠시 민원인을 돕고 있는 사이 B씨 뒤로 접근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는 것.

○… B씨는 이날 민원인 A씨가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한 느낌이 들어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관계자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CC-TV를 통해 A씨가 B씨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모습이 확인됐지만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정보 분석(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7타경7942	1	목포시 하당로14, 110동 8층 805호 [상동,꿈동산신안아파트] 117.77㎡	아파트	178,000,000 178,000,000	2017타경51154,2018타경6151[중복]
2018타경2029	1	목포시 산정로298, 103동 14층 1401호 [연산동,현대아파트] 84.99㎡	아파트	112,000,000 112,000,000	
2018타경51823	1	목포시 상동로43, 201동 10층 1002호 [상동,상동2단지아파트] 38.64㎡	아파트	50,000,000 50,000,000	
2018타경52208	1	함평군 함평읍 교광길13-8, 102동 1층 104호 [함평내교주공아파트] 51.95㎡	아파트	89,000,000 89,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8타경2609	1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559-15 301㎡ 무안군 일로읍 무흥길 60-4 가동호 58.8㎡ 제시외 창고시설 등 81.6㎡[물건번호1:목록2[건물]및제시외건물[60㎡,19.6㎡]일부 및제시외건물[2㎡]은목록1[559-15]및타인소유인접필지559-98번지양지상걸쳐소재]	대 단독주택	49,571,800 49,571,8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1[559-15]매각대상아닌철컨테이너1동소재
[대지/임야/전답]					
2018타경2296	1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237 565㎡	대	23,165,000 23,165,000	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2018타경2609	2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559-95 366㎡[연고자미상분묘수기소재.원상회복명령대상]	전	9,150,000 9,1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8타경3220	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85-1 9814㎡[양행순지분1/4.토지와인접한산85-8번지와의지적경계부근에분묘로추정되는봉분이소재]	임야	51,523,500 51,523,5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8타경3671	1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912 202㎡	답	1,353,400 1,353,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맹지
	2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1945 803㎡	답	5,942,200 5,942,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3978	1	무안군 일로읍 상신기리 110-40 589㎡	답	12,958,000 12,95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275-17 764㎡	답	17,572,000 17,57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676 787㎡	전	22,036,000 22,03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8타경3442	1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103 2층 202호 116.96㎡	근린시설	247,900,000 247,900,000	
2018타경4209	1	무안군 삼향읍 대죽서로15번길34, 1동 4층 401호 193.34㎡	근린시설	336,400,000 336,4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8. 11. 12.[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11. 19.[월] 16:3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10.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고필석